
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

□ 개정배경

- 내용연수 제도와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* 및 민원제기
 - * 시료채취의 공정성 결여, 검사시료 수 부족, 검사항목 부적절('18년, 권미혁의원)
- 지하구 화재안전기준(NFSC 605)의 소공간용소화용구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형식승인기준 제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
- 시험시설심사 등 불합리한 요인 개선

□ 추진경과

- 내부관계자 검토회의 '19.3.27./'20.7.16./'20.10.27.
- 제조업체 관계자회의 '20.6.4./'20.7.17.
- 소방기술자문위원회 '19.4.11./'20.7.14./(서면)'20.7.24.~7.30.

□ 개정내용

[내용연수 제도 개선]

-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사용기간 연장

현 행	개 정 안
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	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- 경과연수 20년 미만 : 3년 - 경과경수 20년 이상 : 1년

- 성능확인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성 및 공정성 확보
 - (시료추출) 관계인 제출 → 전문검사기관(기술원) 지정
 - (검사항목) 내압시험 → 내압시험 + 방사시험

- (시 료 수) 최대 8개 → 13개 이상

로 트 크 기	20이상 ~500이하	51~ 500	501~ 35000	35001 이상	→	20이상 ~150이하	16~ 50	51~ 150	151~ 500	501~ 3200
시료수	2	3	5	8		2	3	5	8	13

- 성능확인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(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)

[소공간용소화용구 관련 규정 마련]

- 형식·변경승인의 처리기간* 신설 및 장기시험 처리기간 예외규정** 추가
* 형식승인 65, 변경승인 50 ** 합성수지노화시험 및 가속노화시험 시 시험일 만큼 연장
-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(100개) 및 제품검사 합격표시 규정

[시험시설심사 불합리한 요인 개선]

- 성능인증시험시설 심사 시 교정 조항 및 그 밖의 세부사항 신설
- 주소지 이전 재발급 및 제품검사 시 시험시설심사 제외 품목* 규정
* 완제품이 아닌 형태(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,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등)

[기타]

- 축광표지에서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삭제
- 형식승인·성능인증 신청 시 MSDS* 첨부서류 추가
*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
- 형식승인 대상 품목 재분류로 송수구를 성능인증 대상 품목으로 변경
-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·폐기 또는 교체명령권자 변경
- 시·도지사→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*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 반영(20.2.18.)
- 성능확인검사 시행 유예기간 6개월 부여

□ 향후일정

- 의견조화·행정예고(2월) → 규제·법제심사(4월) → 개정발령(5월)